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5

발의연월일: 2020. 9. 16.

발 의 자: 권성동·태영호·이철규

박덕亭・홍준巫・金炳旭

윤창현 • 한기호 • 서정숙

김용판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 국가 중 15개국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였고, 상속세 폐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함. 또한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경쟁의 결과임.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 전체의 1%대에 불과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공제요건이나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정서상 급격한 상속세 완화가 힘든 점 또한 감안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그리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
-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폐지함(안 제18조제6항).
- 다.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 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함(안 제71조제2항제2호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1) 중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으로.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을 "평균"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평 균"으로.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을 "평균"으 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5억원 초과	4천5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억4천5백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7억4천5백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외의 경우"를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 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u>수</u>)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			
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서 피상속인이 <u>10년</u>	<u>5년</u>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u>이상</u>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가. ~ 다. (생략)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 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 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 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 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u>5년</u>

-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 다. (생략)
 -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u>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u>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2) <u>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u>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1.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

- 1)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 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
- 2) <u>상속개시일부터 5년간</u>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 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 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 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삭 제> 당하는 경우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 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경우
-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 는 경우

2.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u>평균</u>
<u>평</u> 균

2.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ע וגן וכ		
<u><과세표</u>	<세 율>	
<u>준></u>		
1억원	교비표주의 100분의 10	
01하	<u>과세표준의 100분의 10</u>	
1억원		
<u>초과</u>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u>5억원</u>	<u>금액의 100분의 20)</u>	
이하		
5억원		
<u>초과</u>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	<u>금액의 100분의 30)</u>	
<u>이하</u>		
10억원		
<u>초과</u>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	<u>금액의 100분의 40)</u>	
<u>이하</u>		
30억원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u>초과</u>	<u>금액의 100분의 50)</u>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 | <삭 제>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⑦ ~ ①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속세 세율)

<과세표	<세 율>	
<u>준></u>	<u> </u>	
1억원	<u>과세표준의 100분의 5</u>	
<u>이하</u>		
1억원		
<u>초과</u>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u>5억원</u>	<u>금액의 100분의 10)</u>	
<u>이하</u>		
5억원		
<u>초과</u>	4천5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u>10억원</u>	<u>금액의 100분의 20)</u>	
<u>이하</u>		
10억원		
<u>초과</u>	<u> 1억4천5백만원 + (10억원을</u>	
30억원	<u>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u>	
<u>이하</u>		
30억원	7억4천5백만원 + (30억원을	
<u>초과</u>	<u>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u>	

② (현행과 같음)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 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 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 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71조(연부연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 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 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 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연부연납)	① (현행	과 같
<u>o</u>)		
②		

한다.

1. (생략)

<u><신 설></u>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허가일부터 5년

③ ~ ⑤ (생 략)

--.

- 1. (현행과 같음)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연부 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